

강원도는 가랑비에도 한 격정

한농연강원도연합회 사무차장

김 종 식

초봄까지만 해도 복구공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폐허상태 그대로 방치되어왔던 영동지역 수해 농경지는 어느덧 짙은 초록으로 변했다.

유실된 농토를 넋을 앓고 바라보며 삶의 의욕마저 꺾였던 영동지역 농업인들은 다소 삶의 활력을 되찾은 듯 바쁜 영농일손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 같은 활력도 잠시 뿐. 장마철이 다가오자 가까스로 농작물을 심고 올해만큼은 수확을 고대하던 수해지 농업인은 이내 깊은 시름에 잠겼다.

더욱이 수해복구 공사 진척도가 평균 70%에 그쳐 2차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하천 소하천의 부실한 제방은, 또다시 장마가 발생할 경우 이미 복구가 완료된 인근 수해지역의 농경지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막대한 농경지 유실 등 수해를 입은 양양군 현남면 입암리 화상천 인근 농경지는 하천제방공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논두렁이 하천제방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는 양양군이 수해하천에 대한 항구복구

차원에서 이 마을 유실 농경지 중 상당수를 하천으로 편입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현 시가보다 턱없이 낮은 농지보상금을 책정, 농업인들의 반발로 하천제방 등 복구공사는 손도 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해 당시 4천평에 이르는 문전옥답 중 2천500여평이 하천급류에 유실되어 하천으로 편입된 엄태식씨(52 양양군 현남면 입암리)는 “행정당국이 편입농지의 보상가를 비현실적으로 책정했다”며 “손도 대지 않은 하천제방 등 수리시설로 인해 논두렁이 제방을 대신하고 있어, 비만 오면 유실할 것이 뻔해 또 빛 더미에 앓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또 양양군 서면 용천리 용천1교를 비롯, 고성군 토속면 성대리 속칭 ‘동루골’ 인근 소하천과 인접한 농경지도 하천제방 수해복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해 유실 등 2차 수해로 인한 인근지역 농업인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동해시 삼화동과 삼척시 근덕면 등지에서는 수해 농경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부는 구획정리와 객토작업 등이 마무

리되었을 뿐 농수로는 아직도 완비되지 않은 곳도 많다. 이에 더해 수재민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공사를 책임지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과 공사감리단 관계자들이 공사업자들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아 경찰조사를 받는 등 부실공사로 인한 2·3차 수해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23일부터는 영동지역 수해복구공사현장은 모든 관심이 기상청 일기예보에 집중되고 있었다. 일기예보에서 장마 소식을 접하게 되면 모든 수해복구공사를 전면 중단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도로는 곳곳이 패여 수해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고, 산사태가 났던 곳에는 토사 더미가 그대로 쌓여있다. 수해복구공사를 위해 임시 복구된 도로는 장마에 유실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수해지역 주민들은 '지난 여름 태풍 루사'의 상처를 제대로 씻어내지도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또 다시 올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수해 피해와 더딘 복구공사의 주요 원인은 비현실적인 법규정에서 비롯된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제62조에 국고 보조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등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재해복구비용의 산정) 제1항을 보면 "재해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원상복구(기존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것을



▲ 강원도 영동지역은 장마철을 앞두고도 아직도 수해 복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사진=한국농어민신문)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방재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지난 6월 한달간 전문가 조사단이 강릉 사천천과 연곡천, 양양 남대천 등 3개 하천 106Km의 수해 복구 현장을 답사하여 작성한 '영동지역수해복구사업 현장조사 보고서'에서, 주먹구구식 피해조사와 3개월의 무리한 공사 일정, 일률적 원상복구 원칙에 따른 단편적 토목공사 등으로 '땜질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강원도는 수해로 유실 매몰된 농경지는 모두 9천465㏊에 이르며 이미 100%복구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땅질식 처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하천제방과 농어촌으로 등 기타 공공시설의 부실공사로 인한 농경지 2차 피해는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올해도 강원도 수해지역 농업인들은 다섯평 남짓한 콘테이너 박스 안에서, 가랑비에도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며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근본적인 자연재해 대책과 보상 대책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한동연